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를 “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같은조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정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임용권자는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20일 전까지 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에서 정한다.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 이상 8인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 9인 이상 11인 이하

제2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11(징계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의3 제5항에 따른 징계심의 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동 시행령 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보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재심의요구”로 본다.

② 법 제66조의2 제4항에 따른 교원 징계의결의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강등: 9년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사학기관 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2. 사학기관 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학교법인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1호			
가) 등기 지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00	
나) 등기 지연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00	
다) 등기 지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 제2호	150	300	500
3) 법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법 제32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이에 기	법 제74조제2항 제3호		300	

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				
4) 법 제19조제4항제3호·제48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4호	150	300	500
5) 법 제31조(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5호		300	
6)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6호		300	
7)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7호		300	
8)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8호		300	
9)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9호		300	
나.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 제32조의2	법 제74조제3항	150	300	500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74조제4항	150	300	500
라.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 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1호	300	600	1,000
2)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2호	300	600	1,000
3) 법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3호	300	600	1,000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4호	300	600	1,000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 제5호	300	600	1,000

<u>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u>	<u>법 제74조제1항 제6호</u>	<u>300</u>	<u>600</u>	<u>1,000</u>
<u>7)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 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u>	<u>법 제74조제1항 제7호</u>	<u>300</u>	<u>600</u>	<u>1,000</u>
<u>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 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u>	<u>법 제74조제1항 제8호</u>	<u>200</u>	<u>300</u>	<u>500</u>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2.11.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4조의7, 제24조의11, 제27조, 제29조, 별표 2 제2호 라목 4), 5), 6), 7), 8)의 개정규정은 2022.3.25.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생략) <u><신 설></u>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u>
<u><신 설></u>	<u>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밖에 필기시험 위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 (생략)

<신설>

1.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그 -----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1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같은조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임용권자는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20일 전까지 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제24조의7(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생략)

<신설>

<신설>

수 있다.

제24조의7(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에서
정한다.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
교 : 5인 이상 8인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
교 : 9인 이상 11인 이하

제24조의11(징계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의3 제5항에 따른 징
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동
시행령 제24조의8부터 제24조
의10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위원회”로 보고,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재심의요
구”로 본다.

② 법 제66조의2 제4항에 따른
교원 징계의결의 재심에 필요
한 사항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생략)

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신설>

2. · 3. (생략)

<신설>

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심의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강등: 9년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29조(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사학기관 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

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2. 사학기관 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u>제29조</u> (생략)	6. <u>사학기관 종사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7. <u>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제30조</u> (현행 제29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 문	소관부서	연락처
제21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044) 203 - 6464
제21조의2, 제24조의11 제29조,제30조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 203 - 6454
제24조의7 제24조의11 제27조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 203 - 6486
제24조의7	교육부 대학교원인사팀	(044) 203 - 6922